

수원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0가단5643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수, 김태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육이은, 박민규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현 담당변호사 김준혁

변 론 종 결 2021. 10. 13.

판 결 선 고 2021.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2018. 11. 20.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별지2 목록 기재 매매계약에 대한 권리 · 의무 승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2,71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회사 및 피고의 현황 등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2014. 11. 23.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대표이사 E, 사내이사 F)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2018. 10. 2. 설립된 자본금 5억 원의 주식회사이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D과 피고의 사내이사 F은 모자관계에 있다.

나.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행각서 작성 등

1) 소외 회사는 2019. 9. 19. 원고에게 ‘화성시 G 위치 낙석방지책 공사비 20,000,000원을 2019. 11. 28.까지 지불할 것을 이행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6호증)를 작성교부하여 주었다.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은 2020. 10. 7.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8년 5월분(2018. 5. 1. ~ 2018. 5. 31.)부터 2018년 11월분(2018. 11. 1. ~ 2018. 11. 30.)까지의 임금 11,868,382원 및 퇴직금 7,683,251원의 합계 19,551,63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갑 제7호증)를 발급하였다.

다. 소외 회사와 H 등 사이의 개발 인 · 허가 및 매매계약 체결 등

소외 회사는 2017. 7. 12.경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H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일원을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및 공장용지 용도로 개발하는 사업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를 H 명의로 취득하고, 위 인 · 허가 후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인 · 허가에 관한 권리 일체를 소외 회사가 8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개발 인 · 허가 및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그 무렵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H에게 계약금 5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와 H 등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피고는 2018. 11. 20.경 H 등과 사이에, 피고가 H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합계 80억 원(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매매대금 6,208,500,000원,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매매대금 501,400,000원,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매매대금 1,290,1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별지2 목록 기재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H 등에게 잔금 74억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8. 12.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소외 회사의 무자력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제1계약 체결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다.

바. 피고의 손실보상금 수령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화성시에 수용되었고, 피고가 화성시로부터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16,514,515,6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20,000,000원 및 임금 19,551,633원 합계 39,551,633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는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각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서 2018. 11.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제1계약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권리의무 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제2계약을 통하여 소외 회사가 가지는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각종

인·허가권을 피고가 승계하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승계계약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D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집행을 면탈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에 대한 이익을 독점하고자 소외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한 후 소외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재산권을 처분한 것으로 명백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승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의 원상회복 방법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상당액 42,713,000원[=21,009,000원(=공사대금 20,000,000원 + 이에 대하여 2019. 11. 29.부터 2020. 10. 1.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009,000원) + 21,704,000원(=임금 19,551,633원 +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20. 10. 1.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152,767원)]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16,514,515,630원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출한 7,410,000,000원을 제외한 수익 9,104,515,630원(=16,514,515,630원 - 7,410,0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원고의 채권액 42,71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승계계약 체결 여부의 확정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2계약의 각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1항에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가 피고에게 승계됨을 전제로 ‘본 계약은 2017년 7월 12.일자 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제1계약과 이 사건 제2계약의 매매대금이 동일하고, 피고는 소외 회사가 H 등에게 지급한 59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7,410,000,000원)만을 H 등에게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제2계약은 H 등이 소외 회사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한 이 사건 제1계약 해지 유예기한인 2018. 11. 30. 이전에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제2계약 체결 무렵 피고가 이 사건 제1계약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써 피고와 H 등 사이에 이 사건 제2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D과 가까운 사이였고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2018. 11. 14.자 녹취록(갑 제11호증)에 나타난 원고와 D의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8. 11. 14.경 이 사건 승계계약 및 이 사건 제2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함에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20. 10. 26.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구체적 판단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이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는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D이 2018. 11. 14. 대화를 할 당시 D이 원고에게 ‘우리가 새로 법인 하나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그리 가는 거야. 그 5억짜리 법인 만든 거 가지고’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자본금 5억 원의 주식회사로서 2018. 10. 2. 설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8. 11. 14.경 이 사건 승계계약의 체결사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소외 회사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대한 판단

1)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 원고는, 원고가 2010.경 소외 회사로부터 화성시 G 낙석방지책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공사대금 2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소외 회사가 2019. 9. 19.경 원고에게 ‘화성시 G 위치 낙석방지책 공사비 20,000,000원을 2019. 11. 28.까지 지불할 것을 이행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2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항 3호에 의한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게 되나,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인 위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고,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화성시 G 낙석방지책 공사를 2000.~2001.경 무렵에는 완성하였다고 보이고, 위 공사를 완성한 때에 그 공사대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2002. 1. 1.부터 진행하여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5. 1. 1. 무렵에는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2019. 9.경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를 소외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자로서는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등 참조), 소외 회사가 위 이행각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이미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회사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피고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임금채권에 관하여

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이 2020. 10. 7.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8년 5월분부터 2018년 11월분까지의 임금 11,868,382원 및 퇴직금 7,683,251원의 합계 19,551,63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은 원고와 소외 회사 대표이사 D을 조사하여 그 진술을 근거로 위와 같은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중부지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서의 조사 당시의 원고와 D의 각 진술이 허위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일응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19,551,633원의 임금채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결국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19,551,633원의 임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그러한 상태에 있었어야 한다.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야 한다. 이 때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보유한 적극재산 중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객관적 가능성이 없다면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4554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승계계약 체결 무렵 H 등에게 이미 지급한 5억 9,000만 원을 제외한 잔금 74억 1,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데,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1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은 2018. 2. 9.인데, 소외 회사는 그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18. 11. 1.경까지도 잔금 74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② H 등은 2018. 11. 1. 소외 회사에게 ‘2018. 11.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제1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던 점, ③ 피고는 H 등에게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잔금 74억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제1계약과 별개의 등기원인인 이 사건 제2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④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잔금지급기일에 가까운 2017. 12. 31.경 소외 회사의 자본 총계는 -337,111,449원(=자산 총계 650,193,767원 - 부채 총계 987,305,216원)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H 등에 대한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만한 자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제2계약 체결 당시 H 등에게 잔금지급의 이행을 제공하였다거나 잔금을 지급할 자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소외 회사의 채권자 I은 2020. 10.경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0가단564525호로 이 사건 승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21. 11. 25.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소외 회사와 피고가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I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승계계약 체결 무렵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승계계약의 체결로 이러한 재산적 권리를 피고에게 이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국 이 사건 승계계약의 체결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집행이 용이한 재산으로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적극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소외 회사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승계계약이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우석

[별 지 1]

부동산 목록

1. 경기도 화성시 임야 26040㎡
2. 경기도 화성시 전 2103㎡
3. 경기도 화성시 임야 5411㎡

[별 지 2]

<소외 와 소외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내용>

매도인 :

매수인 : 주식회사

매매계약일 : 2017. 7. 12.

매매 목적물 :

1. 경기도 화성시 임야 26040㎡
2. 경기도 화성시 전 2103㎡
3. 경기도 화성시 임야 5411㎡

매매가액 :

계약금 : 590,000,000원

잔금 : 7,410,000,000원

합계 : 8,000,000,000원

